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7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서영석 · 김남희 · 윤준병
허종식 · 서미화 · 박홍배
김 윤 · 박희승 · 이훈기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 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藥事)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사(藥事) 업무는 할 수 없다.

제69조의4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藥事)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藥事) 업무는 할 수 없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4(시정명령) ----- ----- ----- ----- ----- ----- ----- ----- ----- ----- -----.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항----- ----- ---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 ----- ----- -----.
1. 1의2. (생 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 ----- ----- ----- --.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항----- ----- ----- -----
3의2. ~ 11. (생 략)	3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